

특집
논문

5·18, 광주 일원에서의 연행·구금 양상과 효과

계엄군의 연행·구금이 지역민 및 일선 행정기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김형주 _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논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5·18 항쟁 당시 연행·구금의 방식과 효과를 밝히고 이를 지역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연행과 구금을 경험한 시민들의 경험과 이때 가해진 계엄군의 행위와 언어를 분석하여 연행·구금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방식, 효과를 파악한다. 연행지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시위현장을 지나다가 혹은 구경하다가 계엄군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연행되었다. 그들은 연행 장소 부근에서 옷이 벗겨진 채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박은 채 대기하다가 군 트럭, 전경버스, 형사기동대 미니버스, 교도소 호송차 등에 실려 광주경찰서, 서부경찰서, 광산경찰서, 공군헌병대,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31사단, 광주교도소, 상무대로 연행된다. 연행지는 구금 장소에서 조사를 통해 A, B, C, D 등급으로 분류되어 훈방되거나 구속된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은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는데, 이것은 적을 섬멸하여 승리해야 하는 군대 자체의 특성, 최강의 부대임을 자부하는 군 문화와 역사적 경험, 정권의 폭동진압의 요구, 시위 상황의 긴장, 공포, 분노, 피로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였다. 5·18 당시 연행·구금은 연행자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일선 공무원에게까지 공포를 심어주고, 복종을 강제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또한 연행과 구금에 일선 행정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되어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이 신군부에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 **주요어:** 5·18, 신군부, 계엄군, 연행, 구금

1. 문제제기

5월 17일 밤 12시를 기해 신군부는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신군부가 계엄령 확대를 공포하기 전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계엄령에 반대할 것이 분명한 일부 대학생에 대한 예비검속이었다. 신속하게 진행된 예비검속으로 광주에서 12명이 5월 17일 자정을 전후하여 학교와 자택에서 연행되었다. 또한 17일 자정을 기해 선포된 계엄령 전국 확대 실시를 전후하여 전북 14개 학교, 전남 20개 학교 등에 계엄군이 진주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대 34명, 원광대 23명, 전남대 69명, 조선대 43명이 연행되었다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1990, 21-22).

연행과 구금은 예비검속에만 그치지 않았다. 계엄군은 그들에게 저항하는 학생과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다. 여기서 문제는 연행·구금의 범위와 방식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계엄군은 시위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던 수많은 시민들까지 연행·구금했고, 방식 또한 대단히 비인도적이고 살육적이었다. 이 점이 5·18 항쟁(5·18 민주화운동 이하 5·18)에서 연행과 구금이 문제가 되는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계엄군은 이미 부마항쟁과 서울지역에서 폭압적인 진압을 행한 바 있다. 그러나 5·18과 비교했을 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수는 많지 않다(박만규 2003, 6-8). 2009년 광주광역시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구속 및 구금 등의 기타 피해자는 1,589명이다. 그러나 정확한 숫자는 불분명하다. 국방부 장관(윤성민) 보고자료 “광주사태보고”(1985.6.7)에 따르면 “광주항쟁과 관련하여 검거된 사람은 2522명으로, 이 중 훈방이 1906명이며, 616명이 군법에 회부되어 212명

은 불기소되고, 404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황석영·이재의·전용호 2017, 471). 한편 5·18 당시 의무전경으로 진압에 참여한 박시훈은 1980년 5월 19일 오후 “민간인 2,000명이 체포되었다. 31사단 수용 능력이 부족하여 상무대가 넘치고 있다”는 등의 무전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90, 1536). 따라서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5월 19일 오후에 연행자가 이미 2,000명을 넘었고, 이후에도 시민들은 계속해서 연행되었기 때문에 항쟁 당시 연행 구금된 수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찾아볼 수 없다. 군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으나 그 수치는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을 신청한 관련자들의 행적을 통해 그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관련자들이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마저도 요원한 상태이다. 5·18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수적인데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사나 연구가 시도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는 비단 진상규명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연행과 구금은 국가권력의 행사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사실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고, 국가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 힘으로 억압하는 것은 근대 이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발견되는 현상”인데(최정기 2001, 440), 연행과 구금은 국가가 활용하는 억압 장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연행과 구금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분석이 된다면, 단순히

연행과 구금에 대한 형사정책적 문제의식을 넘어 국가의 권력 행사 범위와 수준, 그리고 정당화 문제까지 풍부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5·18에서 민간인들이 군인들에 의해 연행되거나 구금되면서 폭행과 고문을 당하고 그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살해되었다면, 이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전쟁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연합국이 제기한 ‘뉘른베르크 재판’은 국가범죄에 대한 다양한 원칙들을 제기했는데, 그에 따르면 5·18 당시의 연행과 구금도 ‘인도에 반한 죄’에 포함될 수 있다. ‘뉘른베르크 재판’의 근거가 되었던 국제군사재판소의 설치헌장(흔히 ‘뉘른베르크 헌장’으로 불림)은 구체적으로 ‘민간인에게 자행되는 살해, 절멸, 노예화, 이송, 국제군사재판소가 관할하는 범죄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행된 정치적·인종적 또는 종교적인 이유에 의한 박해’를 인도에 반한 죄로 본다(야스퍼스 2014, 118). 이후 인도에 반한 죄의 성립에는 평화에 반한 죄나 전쟁범죄와의 관련성이 요구되지 않고, 전쟁이나 국내 무력 충돌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조시현 2018, 50). 또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9조 2항에서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람의 신체와 정신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9조 2항 9)나 ‘자기의 구금 또는 통제하에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어 고문하는 행위’(9조 2항 8)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5·18 당시에는 시위 참여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연행·구금하면서 끔찍한 고문과 살해 행위가 저질러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5·18 당시 연행·구금이 특정 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물론 5·18 당시에 수많은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이들은 연행·구금자에 비해 규모가 작았고 일정하게 식별 가능했다. 식별 가능한 공포와 식별 불가능한 공포 사이의 간극이 어느 정도였는지 예상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연행과 구금이 목격자인 시민들과 대상자인 연행자 모두에게 부상과 죽음과는 또 다른 차원의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연행자와 구금자라는 ‘생존했으나 배제시켜야 할’ 시민들을 처리하는 과정 역시 부상자와 사망자와는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 계엄군과 지역행정기관이 어떻게 대응하고 결합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5·18에서 연행·구금이 어떤 메커니즘(mechanism) 속에서 작동했고, 그것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이며, 결과적으로 연행·구금이 지역민과 지역행정기관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5월 18일부터 5월 26일까지 계엄군에 의한 시민들의 연행과 구금에 초점을 맞추고 시민들의 활동과 구금 장소 그리고 계엄군의 연행과 구금 방식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기간을 5월 18일부터 26일까지로 한정하는 이유는 5월 17일 예비검속과 5월 27일 도청에서 최후항전 이후의 연행·구금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만큼 그것의 목적과 수준, 범위가 달랐기 때문이다. 또한 5월 18일부터 26일은 항쟁의 거의 전 기간을 아우르는 시기이고 이 사이에 가장 많은 연행·구금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시의 연행·구금 상황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가 제기하는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쟁 당시 계엄군은 시민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연행했는가? 둘째, 계엄군은 연행한 시민들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구금했는가? 셋째, 계엄군의 연행과 구금 방식에 영향을 준 요인들은 무엇인가? 넷째, 연행과 구금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1) 선행연구 검토

5·18 당시 계엄군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이전까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군 자료의 상당 부분이 공개되지 않았을 뿐더러, 공개되었더라도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측면이 많아 교차 검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군 자료가 공개되어야 했으나 2000년대 중반 국방부과 거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국방부 조사위)가 발족되기 전까지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군부와 계엄군의 진압에 대해 접근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연구들은 신군부의 동향과 진압작전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항쟁 전 신군부의 동향, 구체적으로 군의 충청작전과 신군부의 시위진압작전을 전기(5월 1~16일)와 후기(5월 17~27일)로 구분하여 부대의 동선과 병력, 장비를 분석하고 광주진압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분석했다(박만규 2003). 하지만 이 연구는 군의 동향에 주목한 나머지 시민들의 피해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반면에 정해구는 군의 진압 작전을 1단

계: 과잉 진압(5월 18~19일), 2단계: 진압의 실패(5월 20~21일), 3단계: 도로 차단과 봉쇄(5월 22~24일), 4단계: 진압-상무충정작전(5월 25~27일)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서 시민들의 저항까지 서술하고 있다(정해구 2001). 전반적으로 이들 연구는 “진압과 학살의 단계를 명확하게 할 뿐 아니라 각 분기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노영기 2005, 264). 다만, 시민들의 피해를 부상과 사망, 연행과 구금 현황 등으로 구분하여 다루지 않은 점은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연구와 달리 5·18을 학살에 초점을 맞추며 시민들의 피해에 구체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최정기는 5·18의 사상자를 인구학적으로 분석한 다음, 사망 사건이 발생한 사건을 별도로 분류하여 유형화하고 사건의 맥락과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최정기 2001). 기존의 연구가 저항의 측면이나 신군부의 동향과 작전에 중심을 두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학살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의미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집단학살뿐만 아니라 집단연행 혹은 집단구금 역시 시민들에게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안겨주었던 국가적 폭력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분석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5·18 당시 구금에 대해서는 5·18 최후 항전 참여자들의 구금 생활을 다룬 연구가 유일하다. 이 연구는 1980년 5월 27일 도청에서 최후까지 항전한 참여자들이 연행과 구금 방식을 검토하고 그들의 대응과 구금 생활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다(김형주 2018). 하지만 5월 27일 이후의 연행자 중 최후 항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계엄군의 구금 방식보다 연행자의 구금 생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항쟁의 전 기간에 벌어진 계엄군의 연행·구금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한편 2005년 8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진행된 국방부 조사위의 활동으로 상당한 양의 군 자료가 새롭게 발굴되었다. 이를 계기로 계엄군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들은 주로 계엄군의 작전과 발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김희송 2017; 노영기 2015a; 2015b; 안길정 2017). 이들 연구는 새롭게 발굴된 군 자료를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군의 작전과 진압, 그리고 밝혀지지 않았던 의혹을 재조명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발표된 연구 중 이 논문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연구는 김영택과 노영기의 연구이다. 김영택은 신군부의 정권 찬탈 음모와 항쟁 당시 계엄군의 진압은 ‘과잉 진압’이 아니라 ‘살육적인 군사작전(살육작전)’이었다고 지적하면서 군의 진압 행위와 광주시민들의 저항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세세하게 묘사했다(김영택 2008). 또한 노영기는 “제13대 국회의 광주청문회 과정에서 발굴됐으나 대부분은 그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하지만 2005년 국방부조사위 활동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자료를 기반으로 신군부의 초기 대응의 타당성을 검토한다(노영기 2013). 노영기의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1980년 5월 19일 오전까지 체포 현황과 연행자 중 부상을 당한 사람들을 전투교육사령부의 『광주사태시 전교사 작전일지』(1980.5.19)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이다. 연행과 부상에 대한 구체적인 수가 군 자료에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문제는 군 자료의 정확성이다. 군 자료는 군의 작전, 부대이동과 배치,

병력과 장비운용, 군 정보망이 파악하고 있는 5·18의 실상 등을 담고 있지만, 군의 입장에서 서술되거나 사후에 왜곡된 측면이 있다. 또한 군 자료의 특성상 당시의 상황을 간략한 문구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진압에 투입된 계엄군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진압 당시의 계엄군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참여자 혹은 피해자들의 증언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이 연구는 5·18 관련자의 구술 자료를 통해 항쟁 당시 계엄군의 연행과 구금에 접근하고자 한다.¹⁾

2) 연구자료와 방법

이 연구가 활용하는 자료는 크게 구술 자료와 공공기록물, 기존의 계엄군 관련 연구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술자료는 ‘연행과 구금을 경험한 시민들의’ 구술로 한정한다. 연행과 구금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자료가 전무한 조건에서 학계와 민간 차원에서 확보한 구술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자료는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가 발행한 구술 자료집을 활용한다. 1990년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에서 발행한 『오월광주민중항쟁 자료전집』은 항쟁 이후 가장 가까운 시기에 항쟁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채취한 최초의 구술이라는 점, 500여 명에 달하는 방대한 수의 구술을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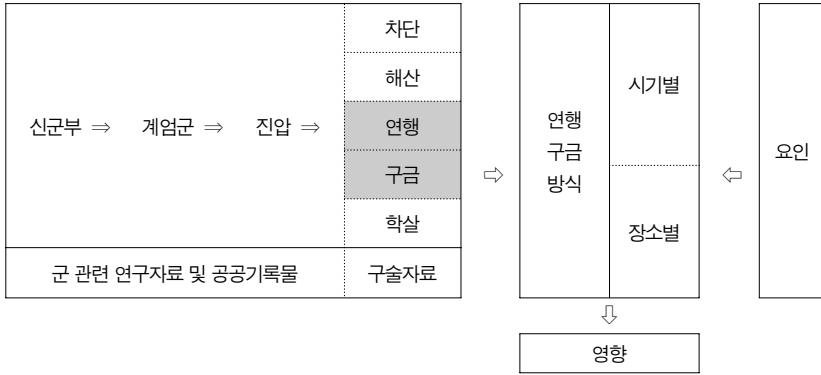
1) 사실 증언 자료는 2차 자료로 연행과 구금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연행·구금 관련 보안사와 계엄군의 자료에 접근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밝힌다. 향후 군 자료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연행과 구속을 경험한 시민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많은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술자들이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따라서 다른 구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류가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공공기록물을 통해 구술 자료의 한계를 보완한다. 공공기록물은 연행자에 대한 훈방과 재판과 석방에 대한 군의 지시와 행정기관(전라남도와 광주시)의 대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당시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는 연행된 시민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훈방하거나 재판을 통해 형을 부과하였는데, 훈방조치와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일선 행정기관에 지침을 내려 관련 사항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고, 행정기관은 이 지시에 따라 이를 집행하였다. 따라서 공공기록물을 통해 군의 연행·구금자 처리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엄군 관련 기존의 연구 자료는 연행과 구금 관련 군의 1차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계엄군의 연행·구금이 행정기관과 결합되는 과정과 그것이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수집 문헌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5·18 당시의 연행과 구금에 접근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5·18에서 연행과 구금을 겪은 시민들의 ‘말’을 기록한 자료와 공공기관의 ‘문자’를 기록한 공문과 첨부 문서를 통해 연행·구금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해는 5·18이라는 사례에서 드러난 연행·구금에 대한 현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묘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설명은 연행과 구금에 영향을 준 동기와 그것이 발생시킨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을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은 연구방법과 내용을 단순화한 것이다. 군 관

〈그림 1〉 연구방법과 내용



련 연구자료 및 공공기록물, 그리고 구술 자료를 통해 계엄군의 진압, 특히 연행과 구금에 접근한다. 연행과 구금방식을 분석하고, 여기에 영향을 준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가 편찬한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1990, 이하 사료전집)에서 연행·구금을 경험한 증언자를 파악하고 그들의 증언을 분석했다. 사료전집에서 파악된 연행자 수는 총 247명이다. 이 중 연행을 직접 경험한 증언자는 234명이고, 가족의 증언을 통해 연행이 확인된 수는 1명, 연행을 경험한 증언자가 언급한 다른 연행자의 수는 12명이다.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합동수사본부 수사관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통합병원으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다.

전체 인원 247명을 다시 시기별로 구분하면 5월 17일 밤에 3명, 5월 18일부터 26일 사이에 82명이 연행되었고, 5월 27일에 53명, 5월 28일부터

〈표 1〉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에서 드러난 연행·구금자 사례(5월 18일~5월 26일)

구분	연행과 구금 모두 경험	연행만 경험				소계	총계
		구출	탈출	계엄군의 방치	계엄군의 방면		
수(명)	55명	4명	2명	8명	13명	27명	82명

주: 이 표는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에서 5월 18일부터 26일 사이에 연행과 구금을 경험한 증언자들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1981년 8월 사이에 89명이 연행되었다. 연행 일시를 특정할 수 없었던 증언자는 20명이다. 이 연구는 5·18 항쟁 기간인 5월 18일부터 26일 사이의 연행과 구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연행되거나 구금된 82명의 증언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한다. 여기에는 구금되지 않고 연행만 경험한 경우(27명)도 포함되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듯이 5월 18일부터 26일 사이에 연행과 구금을 경험한 증언자는 총 82명으로 여기에는 연행만 경험한 27명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연행만 경험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연행자는 연행되어 가는 도중에 혹은 주변 현장(대로변, 옥상 등)에서 집단적으로 이송대기 중에 혹은 운송 차량(군용트럭, 전경버스 등)에 탑승했다가 상황을 모면(연행 중 방치 8명, 구출 4명, 탈출 2명)하거나 계엄군에 의해 방면(13명)되었다. 여기서 ‘방치’는 계엄군이 실신한 연행자를 끌고 가다가 놓고 가버린 경우이고, ‘구출’은 가족이나 시민들이 항의하여 빠져나온 것이고, ‘탈출’은 연행 중 도망친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방면(放免)’은 지휘부가 하급자에게 명령하여 풀려난 경우인데 주로 나이가 아주 어리거나 많은 사람들이 지

휘관에게 애걸하여 방면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가 이들을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한 이유는 이들이 구금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계엄군들에게 직접적으로 연행을 당했고, 구출, 탈출, 방치, 그리고 방면됨으로써 연행 당시의 다양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²⁾

3. 계엄군의 투입과 연행·구금의 출현³⁾

1) 공세적이고 광범위한 연행·구금: 5월 18일부터 5월 19일

5월 17일 자정을 전후로 광주 시내의 주요 거점을 장악한 계엄군은 5월 18일 오전 9시 경 전남대 정문에서 전남대생들과 처음으로 충돌한다.⁴⁾

-
- 2) 사료전집 이외의 증언은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연행·구금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있다. 연행·구금의 주체였거나 장소로 활용되었던 경찰과 군(상무대, 31사단, 공군 헌병대, 보안대 등), 교도소,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측의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 3) 3장은 사료전집에서 연행과 구금을 경험한 증언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 4) 5월 18일 오전 전남대 정문에서 학교에 들어가려는 학생들과 이를 저지하는 계엄군 간에 실랑이가 벌어질 무렵, 전남대 후문에서 홍사단 아카데미 회원들이 계엄군에게 구타당하는 사건이 있었다(당시 상황을 경험한 학생이 사건이 이른 아침에 일어났고, 그것이 ‘최초’의 충돌이었다고 증언하는 것으로 보아 사건이 전남대 정문에서 집단적 충돌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담양 병풍산으로 수련회를 갔다가 5월 18일 새벽 5시 30분 계엄령이 확대되었다는 라디오 방송을 듣고 아침을 먹고 급히 귀가하는 길이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다 전남대 후문에 계엄군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계엄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는데, 계엄군이 버스를 세우고 이들을 후문으로 끌고 와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이다(최정기 외 2020, 133).

이후 학생들은 시내로 진출하는데, 시위가 계속되자 계엄군이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시내로 투입된다.⁵⁾ 이때부터 계엄군은 학생들과 시민들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연행하기 시작한다. 이들 중 일부는 풀려났지만, 일부는 실신한 상태로 계엄군에게 끌려갔다. 이들은 주변의 대로변이나 건물로 끌려갔는데 이곳에서 구타와 기합을 받으며 오랜 시간 머물렀다. 그리고 트럭에 실릴 만큼 인원이 채워지면 군용트럭에 실려 다시 제3의 장소로 이송되었다. 이송 시에도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뺨뺨하게 앉아 이송되거나, 널 부러진 채로 차곡차곡 쌓이거나 트럭 양 옆에 세워진 채로 이송되었다. 계엄군이 트럭 양 옆에 연행자를 세운 것은 시민들의 항의가 거셌기 때문인데 연행자를 방파막이로 사용한 것이다. 이들은 다른 장소로 계속 이송되었는데, 이때에는 군용트럭과 전경버스가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승룡의 경우 전남대 본부 1층에 수용되어 새벽을 보내고 아침에 다시 3층 회의실로 옮겨졌다가 서부경찰서(잠시 체류)를 거쳐 상무대로 이송되었다. 나머지는 시내에서 연행되었는데 중간 구금 장소는 31사단 연병장, 광주경찰서, 서부경찰서, 조선대운동장이고, 최종 구금 장소는 상무대(영창, 연병장)였다.

계엄군은 연행한 시민들을 연행 장소와 가까운 수용시설(경찰서), 군의 통제력 아래에 있는 시설(31사단, 상무대, 조선대, 전남대)로 보냈다. 처음에 계

5) 군기록과 군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계엄군은 5월 18일 오후 4시 무렵 시내로 투입되었으나(황석영·이재의·전용호 2017, 70), 사료전집의 일부 증언자(김정섭, 노홍숙, 장성암)는 오후 2시경 시내에서 계엄군을 목격하기도 한다(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1990, 1313; 1410; 1416). 이들이 제시하는 상황과 시간이 구체적이어서 확인이 필요하다.

엄군은 연행자에 대한 수용시설로 상무대 영창과 31사단, 그리고 광주경찰서를 활용한다. 상무대 영창과 31사단은 군사시설로 자신들의 통제권 아래 있었기 때문이고, 광주경찰서는 시내에 가까이 위치해 있고, 유치장 등 수용시설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내 곳곳에서 시위대와 계엄군 간의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동을 위한 동선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대와 서부경찰서를 활용하는데, 조선대 역시 시내 가까이 있으면서 계엄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서부서는 시내에서 떨어져 있었지만 수용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광주교도소 수용을 시도했다가 다시 상무대를 활용한다. 이미 상무대에는 예비검속으로 붙잡힌 연행자가 수용되어 있었다. 상무대는 전투병과 교육사령부가 위치한 곳으로 군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연행자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군의 입장에서는 가장 적합한 공간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하지만 상무대 영창 역시 19일 새벽이 되자 수용 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연병장에 막사를 짓고 연행자를 수용하기 시작했다.

5월 19일의 연행·구금 양상은 18일보다 폭력의 강도가 더 세지고 지역적 범위도 넓어졌다. 19일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합세해 격렬하게 시위했기 때문이고, 계엄군도 시민들과 계속 충돌하면서 분노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연행되었는데, 19일 오전만 해도 연행자의 절반이 시민이었다(황석영·이재의·전영호 2017, 100). 5월 19일은 연행 장소에서도 18일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18일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광주역과 전남대 사거리, 무등경기장 등에서 연행자가 발생하였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18일과 달리 이송 시에 형사기동대 미니버스와 전

경버스가 많이 동원되었고 심지어 교도소 호송버스도 동원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19일에도 군용트럭이 수송차량으로 사용되었지만 시내 일부(금남로와 조선대 인근)와 광주역과 전남대 부근에만 그쳤다. 즉 계엄군은 그들이 장악한 일부 구역을 제외하고 경찰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시민들의 공격을 막고, 연행자를 감춘 채 이송하고자 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전날인 18일 계엄군이 군용트럭으로 연행자를 이송할 때 시민들이 항의하거나 야유를 보내고 계엄군을 공격하는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내에서 붙잡힌 연행자는 주로 군용트럭에 실려 도청 앞 광장으로 이송되었다가 도청에서 다시 조선대 체육관으로 이송되었다. 이 역시 18일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인데, 18일까지만 하더라도 조선대 체육관이 임시 수용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행자가 많아지자 계엄군 측이 조선대 체육관을 수용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에도 연행자는 1차-2차-3차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이송되었다. 연행되어 구금된 시민들은 조선대 체육관, 광주경찰서, 서부경찰서, 전남대 이학관을 전전했고, 전남대 이학관 이송자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대부분 31사단 연병장 막사와 상무대 교회로 이송되었다. 상무대에서는 5월 18일까지만 해도 연행자를 영창과 연병장 막사에 수용했는데, 교회가 새로운 수용 장소로 등장한 것은 연행자의 수가 견잡을 수 없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이송 과정에서도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 광주경찰서와 서부경찰서에 잠시 체류했던 연행자는 우유와 빵을 지급받았다는 점이다. 경찰과 아주머니들이 부식을 제공했는데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행자 대부분은 실신할 만큼 두들겨 맞아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었다.

2) 수세적이고 지엽적인 연행·구금: 5월 20일부터 5월 26일

5월 20일에는 3공수여단이 증파되어 시내에 투입된다. 이로써 광주에는 7공수여단(774명), 11공수여단(2,000명)에 이어 3공수여단(1,392명)까지 약 4,000여 명의 계엄군이 진압작전을 벌인다. 하지만 5월 20일에는 더 많은 광주시민들이 시내로 쏟아져 시위에 합세했기 때문에 계엄군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계엄군은 18일과 19일처럼 많은 시민들을 연행하고 구금했지만 작전지역은 시내 일부와 광주역, 전남대 인근으로 제한적이었다. 연행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계엄군에게 잔인하게 구타당한 뒤 연행되었으며, 이송 대기 장소, 이송차량, 구금 장소 모두에서 다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들이 연행된 장소는 금남로와 공용터미널, 광주역, 전남대 부근으로 다양했으나 1차 구금 장소는 한정적이었다. 예를 들어 시내에서 연행된 시민들은 도청으로 이송되었고, 광주역과 전남대 부근에서 연행된 시민들은 전남대 이학부 건물로 이송되었다. 이는 구금 장소가 연행 장소와 가깝기 때문이었으나, 5월 18일, 19일과는 달리 조선대와 광주경찰서, 서부서, 광주교도소, 31사단, 상무대 등이 1차 구금 장소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것은 수많은 시민들이 시내 곳곳으

6)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이었던 안병하의 비망록에 따르면 안병하는 (경찰)국 수사과장에게 부상자에 대한 치료와 식사를 책임도록 지시했다(이재의 2020, 108).

로 몰려들면서 계엄군의 입지가 축소되고 이송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1차 구금 장소로 도청 지하실과 회의실 등이 부상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 도청 지하실에 구금되었던 시민들은 21일 계엄군이 퇴각하면서 탈출하거나 시민군에 의해 구출된다. 또한 전남대 이학관으로 연행된 시민들은 21일 오후 계엄군이 광주교도소로 철수하면서 함께 이송되었다. 이때 계엄군은 시민들의 반격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큰길을 우회하여 도보로 움직였고, 연행된 시민들은 천막을 씌운 군용트럭이나 군용 탑차, 전경버스로 이송되었다. 계엄군은 트럭 안에 최루탄을 살포해서 이 과정에서 수 명이 사망했다. 계엄군은 광주교도소에 도착하여 시민들을 교도소 창고 안에 수용했고, 시민들은 이후 상무대로 이송되어 훈방되거나 교도소에서 조사를 받고 훈방된다.

5월 21일 새벽에는 광주역 앞에서 시민들과 계엄군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시민들은 차량에 불을 붙이고 계엄군에 돌진했고, 계엄군은 시민들에게 사격을 가하기도 했다. 계엄군은 20일보다 더 수세에 몰렸다. 따라서 5월 21일의 연행과 구금은 시내나 광주역, 광주역과 가까운 전남대 인근에서 주로 발생했다. 하지만 나주의 남평 인근 등 시 외곽에서 연행된 경우도 발견되었다. 계엄군은 시내뿐만 아니라 외곽도 검문소를 설치하고 이동을 제한했는데 이 과정에서 거동 수상자로 의심되어 연행된 시민들이 있었다. 시내에서 연행된 경우 20일과 마찬가지로 도청 지하실로, 광주역과 전남대 부근에서 연행된 경우 전남대 이학부 건물로 1차 이송되었다. 전남대로 이송된 사람들은 교도소와 상무대로 다시 이송되었다가

풀려난다. 특이하게 나주 남평 인근에서 연행된 사람들은 모두 헬기로 이송되었는데, 21일 오후부터 계엄군이 시 외곽으로 철수하면서 시내도로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5월 22일부터 26일 사이에 연행된 수는 많지 않다. 계엄군이 5월 21일 오후 1시 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하자 시민들이 광주 시내와 인근의 무기고에서 무기를 반입해 대항함으로써 계엄군을 시 외곽으로 철수시켰기 때문이다. 계엄군은 더 이상 시내에서 진압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이 시내에서 연행되기도 하였는데, 민간인으로 위장한 형사나 군인들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의심되거나 계엄군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색출하고 모함하거나, 유인하는 방식으로 연행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진월동, 주남마을, 송하동, 송정리 등 시 외곽에서 검문과 사격 행위에 의해 연행된 시민들이 있었다.⁷⁾ 이들은 주로 상무대로 연행되었다가 훈방되거나 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석방된다. 특히 여성은 공군 헌병대로 이송되었다가 광산경찰서로 재이송되었는데, 여성의 경우 광산경찰서 유치장에 분리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여성들은 수사관들로부터 끔찍한 성고문을 당하기도 했다(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90, 910).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는 5월 18일부터 26일 사이 연행 장소와 이송수단, 구금 장소를

7) 민간인으로 위장한 형사 혹은 편의대에 의해 색출 당하거나 모함당하고, 유인하는 방식으로 연행된 사람은 각각 이은하, 진춘심, 김복균이다. 이외에 진월동에서는 최영철, 주남마을에서 홍금숙, 송하동에서 박영철, 김대중, 송정리에서 김오진, 김정균 등이 연행되었다(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90, 1347; 909; 1202; 942; 971; 1519; 272; 1166; 1496).

〈표 2〉 5월 18일부터 26일 사이 연행 장소, 이송 수단, 구금 장소

날짜	연행 장소	이송 수단	중간 구금 장소	최종 구금 장소
5월 18일	시내: 금남로, 총장로, 장동로터리, 공용터미널, 전남대 일대	군용트럭 전경버스	광주경찰서, 서부경찰서, 전남대 본부, 조선대 운동장, 31사단 연병장, 보안대	상무대 영창 31사단 연병장
5월 19일	시내: 금남로, 장동로터리, 공용터미널, 광주역, 무등경기장 일대	군용트럭 전경버스 교도소 호송버스 형사기동대 미니버스	광주경찰서 서부경찰서 전남대 이학부 조선대 체육관	상무대 연병장 상무대 교회 31사단 연병장
5월 20일	시내: 금남로, 장동로터리, 광주역, 전남대, 무등경기장 일대	군용트럭	도청지하실 외 기타 공간 (회의실, 창고 등) 광주경찰서 전남대 이학부	광주 교도소 상무대 영창 및 교회
5월 21일	시내: 금남로, 광주역, 전남대 일대 시외: 송하동	군용트럭(위장막) 전경버스	도청지하실 외 기타 공간 (회의실, 창고 등) 전남대 이학부	상무대 영창 및 교회 광주 교도소
5월 22~26일	시내: 금남로, 산수동 시외: 진월동, 주남마을, 송하동, 송정리, 평동	헬기 군용지프	군 주둔 야산, 파출소 보안대, 공군헌병대	상무대 영창 및 교회 광주교도소 광산경찰서

주: 이 표는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에서 5월 18일부터 26일 사이에 연행과 구금을 경험한 82명의 증언을 토대로 이 기간 동안의 연행과 구금을 연행 날짜와 구금 장소에 따라 재정리한 것이다.

보여준다. 표에서 중간 구금 장소는 1차, 2차, 3차로 이송된 장소 모두를 말한다. 하지만 일부 연행자는 중간 구금 장소에서 훈방되기도 한다. 〈표 2〉에서 보듯이 연행은 시민들의 저항이 격렬했던 곳에서 주로 이뤄졌으나 계엄군이 철수한 다음 날인 5월 22일부터는 시 외곽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연행되었다. 시위는 시간이 갈수록 격해졌고, 이에 따라 이송수단도 변화했는데 교도소 호송버스와 형사기동대 미니버스가 이송을 위해 동

원되기도 하였다. 22일 이후 헬기가 동원된 것은 시민들이 시내를 장악하여 계엄군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간 구금 장소 역시 연행자가 많아짐에 따라 조선대 체육관과 도청 공간 등이 추가된다. 하지만 최종 구금 장소가 상무대와 광주교도소 등으로 제한된 것은 이곳이 5·18 기간 내내 군이 확실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계엄군의 연행과 구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4. 연행·구금의 이중 구조: 폭력의 전시와 은폐

1) 폭력의 전시⁸⁾: 계엄군의 개별적·집단적 폭력

계엄군은 진압을 위해 투입된 순간부터 주택과 대학, 거리와 버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곤봉과 개머리판으로 시민들을 구타하거나 심지어 대검으로 찌르기까지 하였다(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90, 1015; 1333; 1382; 1475; 1506). 시위를 구경하다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까지 끌어내 연행하는 경우도 있었다(광주광역시의사회 1996, 211;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90, 630). 계엄군은 끌어낸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면서 대로변으로 끌고

8) 최정운은 『오월의 사회과학』(1999)에서 '전시적 폭력(demonstrative violence)', '폭력 극장' 등의 용어를 통해 계엄군의 폭력을 설명한다(최정운 1999, 153; 309). 필자 역시 최정운의 견해에 동의하여 광주 시내에서 자행된 계엄군의 무차별적인 폭력을 '폭력의 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갔다. 시민들은 계엄군의 지시에 따라 몇 명이 한 조가 되어 머리에 손을 얹고 끌려갔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혁대를 풀고 걸옷을 벗어야만 했거나, 강제로 벗겨지기도 했다. 계엄군의 무자비한 구타에 실신하는 시민들도 속출했다(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1990, 624; 636; 640; 1008; 1336; 1353; 1382; 1412; 1451; 1466).

그때 대여섯 명의 공수부대원들이 내게도 달려들더니 느닷없이 때리기 시작했다. 잡자기 당하는 일이라 어이도 없었지만 미처 피할 겨를도 없었다. 그렇게 온몸을 맞고는 기절해 버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군 트럭 위에 나 혼자 누워 있었다(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1990, 1311).

계엄군은 실신한 시민들까지 머리채를 잡거나 두 다리를 잡고 이송 대기 장소로 끌고 갔다. 이송 대기 장소에서 시민들은 건물 쪽을 향해 걸옷이 벗겨진 채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은 채 대기하거나 원산폭격, 한강철교와 같은 기합을 받으며 군용트럭이나 전경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했는데 당시 광주 시내 병원에 내원했던 부상자에 대한 기록은 계엄군에 의한 폭력의 규모와 수위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표 3〉은 5·18 당시 부상자의 수와 부상 부위 등을 보여준다. 시민들은 계엄군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당했기 때문에 대부분 복합적인 부상을 입었다. 이 표는 부상자들을 강도가 강한 부상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인데, 여기에는 5월 27일 이후 내원한 환자 37명과 날짜가 미상인 환자

〈표 3〉 5·18 당시 부상 부위와 정도별 환자 수

부상 종류와 정도	환자 수(명)
총상(관통, 파편창 등)	163
두부 손상(두부 골절, 뇌진탕, 열상 등)	102
골절(머리 외의 골절 등)	95
안구 및 안면부 손상(파열, 열상 등)	29
장기손상(파열, 혈흉 등)	23
자상	3
의식불명	4
교통사고	3
기타(타박상, 찰과상, 혈종 등)	141
미상	37
합계	600

주: 이 표는 『부상자 실태 조사서/ 전대병원』, 『부상자 실태 조사서/ 김정형외과 외』, 『부상자 실태 조사서/ 조대병원, 적십자병원』 문서철의 내용을 부상 부위와 정도에 따라 재정리한 것이다.

『부상자 실태 조사서』 3종은 1980년 5월 27일과 5월 30일 전라남도 도시사가 광주 시내 각 병원장(5월 27일), 보건위생과장, 보건소(5월 30일)에 보낸 공문에 의거하여 1980년 5월 27일과 6월 9일 사이에 각 병원에서 1980년 5·18 당시 내원했던 민주화운동 관련 환자들(부상자와 사망자 포함)에 대한 정보를 수집·기록하여 6월 10일 도청에 제출한 문서이다(5·18사료편찬위원회 2000c, 13). 당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병원장들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환자 수를 축소하기도 했다. 따라서 부상자의 수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광주광역시의회 1996, 200; 광주광역시의회 사회 2018, 241).

24명도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환자 539명은 5월 18일부터 26일 사이에 부상당한 환자이다. 〈표 3〉에서 보듯이, 총상 환자가 16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두부 손상과 골절 환자가 뒤를 이었다. 총상 환자는 주로 5월 21일 집단발포 이후 발생했지만, 두부 손상과 골절 환자는 5월 18일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계엄군은 광주에 진주하자마자 학생들과 시민들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였는데, 계엄군이 곤봉으로 시민

들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타격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계엄군은 팔다리와 몸통 등 부위를 가리지 않고 구타해 온몸에 부상을 입은 시민들이 많았다.

당시에 시민들은 이와 같은 폭력적인 현장을 고스란히 목격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계엄군에 항의하고 말리기도 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폭언과 폭력이었다. 계엄군은 실신하거나 사망한 연행자를 끝까지 끌고 가기도 했지만 거리에 그대로 두기도 했다. 시내 곳곳에서 쓰러진 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고, 시내의 의원은 환자들로 가득 찼다. 한마디로 광주 시내는 계엄군 폭력의 ‘전시장’이었다. 하지만 계엄군은 (적어도 5월 19일 이후부터) 연행한 시민들을 외부로부터 철저히 감춘 채 이송한다. 연행자는 밖을 볼 수도 없었고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몰랐다. 외부의 구경하는 시민들 역시 이들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 수 없었다. 이때의 은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시민들은 연행된 후 어디에서 어떤 생활을 했을까?

2) 폭력의 은폐⁹⁾: 구금, 조사와 심문, 치료와 후송

시민들은 광주경찰서와 서부경찰서, 광산경찰서, 조선대, 전남대, 도청, 광주교도소, 31사단, 공군헌병대 보안대, 상무대 등으로 연행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5월 18일부터 수많은 시민들이 연행되었기 때문에 계엄군은 조선대 운동장에서 체육관까지, 광주경찰서는 유치장뿐만 아니

9) ‘폭력의 은폐’라는 용어는 자료 분석을 토대로 필자가 고안한 용어이다.

라 자전거 보관소와 전경버스 안, 상무대는 영창과 연병장 막사, 교회까지 구급 장소로 활용한다. 1차 연행 장소였던 조선대 운동장 및 체육관, 광주경찰서, 서부경찰서, 전남대 등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성명과 주소를 파악하는 등 간단한 질문을 마치고 이송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대부분은 이후에 광주교도소나 31사단, 상무대로 재이송되었는데, 처음에 광주교도소는 준비가 되지 않아 연행자를 수용하지 못했고, 31사단은 연병장에 막사를 설치했으나 수용 인원을 초과하여 나중에 이송된 연행자를 수용하지 못한다. 연행자는 이렇게 전경버스에 실려 곳곳을 전전하다 최종적으로 상무대에 수용되었다. 하지만 전남대 이학부에 1차로 구급되어 있던 연행자는 5월 21일 계엄군이 철수할 때 광주교도소로 재이송되었다.

재이송 시에도 계엄군은 연행자가 밖을 볼 수 없게 하였고, 시민들이 차안을 볼 수 없도록 했다. 전경버스에 실린 연행자는 의자에 앉아 완전히 몸을 숙여야 했고, 군 트럭으로 이송된 연행자는 트럭에 차양막이 쳐졌다. 이때에도 계엄군의 폭력 행위와 가혹 행위가 계속되었는데, 예를 들어 5월 19일 광주경찰서에서 31사단으로 이송될 때에는 중간 중간 있는 검문소에서 계엄군들이 버스로 난입해 무자비하게 구타했으며,¹⁰⁾ 5월

10) 전경버스에는 2인용 의자 하나에 3명씩 앉고 양쪽 의자와 의자 사이의 통로에 두 명씩이 앉았다. 한 대에 약 80여 명이 실린 것인데, 5월 19일 밤에만 광주경찰서에서 최소 7-8대의 전경버스가 움직였다. 이날 하루에만 최소 600명 이상이 연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90, 267; 1425). 하지만 광주경찰서의 상황처리기록부에는 5월 19일 22:00시 총 311명을 계엄분소에 인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전남지방경찰청 2017, 22). 다른 1차 구급 장소를 고려하면 연행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21일 전남대에서 광주교도소로 이송될 때에는 연행트럭 안에 최루탄을 뿌려 시민들은 부상과 호흡곤란이라는 아비규환 속에서 몸부림쳐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 몇 명이 죽고, 교도소 인근에 가매장되었다.¹¹⁾

우리들이 모두 앉자 공수들은 어딘가로 무전 연락을 하더니 큰 주전자에 물을 떠왔다. 우리는 너나할 것 없이 목이 닳았으므로 우리에게 주는 물인 줄 알고 한껏 기대에 차서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죽은 사람 얼굴에다 물을 뿌리고 워커발로 흔들흔들하며 대강 피만 씻어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사진을 찍고 번호를 썼다. 그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갈증을 못 이겨 “물, 물” 했다. 공수들은 “곧 뉘지려는 새끼들이 무슨 물을 먹냐”고 했다. 시체들의 사진을 다 찍고 나자 교목(교도소에 있는 목사)이 나와 명복을 비니, 어찌니 하며 예배를 했다. 그러고는 거적으로 덮어버렸다(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90, 1500).

구금 장소에서도 연행자는 매일 계엄군의 무차별적인 구타에 시달렸다. 시민들은 최종적으로 도착한 구금 장소(주로 광주교도소와 상무대)에서 조사를 받고 A, B, C, D 네 등급으로 분류된다. 이 등급에 대한 단초는 5·18이 종료된 후 전남경찰국장이 1980년 5월 31일 각 서에 시달한 “피의자 등급 분류 지침 시달”이라는 문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5·18 당시

11) 계엄군은 이송 중 죽은 시신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닦고 사진을 찍은 뒤 거적을 덮고 어디론가 옮겼다. 황강주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죽은 시신의 수는 8구이나(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90, 1010; 1451; 1500), 당시 광주교도소에 주둔한 3공수여단 본부대장 김아무개 중령은 12구를 가매장했다고 진술했다(한겨레 2017/10/23).

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에 따르면 “A급은 주동자 및 배후 조정자, 흉기 이용 살상자, 방화 및 약탈자 등이고, B급은 무기 및 흉기 소지하고 사람을 위협한 자, 시위 적극 가담자, 기물 파괴자, 악성유언비어 날조·유포자이며, C급은 시위 자진참가자·협조자, 범인 은닉 및 비호자, D급은 무혐의자”이다(5·18사료편찬위원회 2002, 11). 이에 따라 연행자는 네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수사관들이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거나 자백을 강요하여 억울하게 A나 B등급으로 분류된 시민들이 많았다. 시민들은 혹독한 고문과 가혹행위 속에서 자백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사관의 요구에 따르게 된 것이다. C, D 등급은 다른 등급에 비해 빨리 석방되었는데, 이들이 석방될 때에는 상무대 교회로 재이송되어 그곳에서 순화교육을 받았다.¹²⁾ 이들에게는 좀 더 나은 식사가 제공되었고, 석방되기 바로 전에는 목욕도 할 수 있었다.

계엄군은 연행 과정에서 폭력을 전시하며 공포를 조장했던 것과 달리 구금 과정에서는 자신들의 폭력을 철저히 은폐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재이송 시 연행자 은폐, 구금 장소에서 시신에 대한 가매장과 석방 시 작성한 발설 금지 각서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계엄군은 부상당한 사람들을 의무병이 자체적으로 치료하고 중상자는 통합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함으로써 폭력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다. 전남대 이학관과 광주교도소, 상무대에서 환자에 대한 치료가 일부 진행되었고, 전남도청

12) 일부는 교도소에 그대로 구금되어 있다가 교도소에서 석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석방되기 전 상무대로 재이송되었다.

과 송암공단 주둔지 등에서 헬기로 부상자를 이송했다.¹³⁾ 계엄군이 이송 과정에서 폭력을 은폐하고자 했던 것은 이송을 목격한 시민들이 불법 연행에 항의하거나 이송차량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또한 구금 장소에서 치료를 통해 폭력의 흔적을 지우려 했던 것은 수습위원회에서 연행자들에 대한 석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엄군은 재이송 시 연행자를 차 안에 숨겨야 했으며, 구금 장소에서는 살아 있는 생존자에 대해 치료를 제공해 폭력의 흔적을 지우고 보호의 책임을 다한 것처럼 꾸몄다. 물론 구금 장소에서도 계엄군의 폭력에 의해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계엄군은 연행자에게 이유 없이 수많은 폭력을 가했고, 중상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 계엄군은 사망자를 어디론가 실고 갔는데, 이후에 일부 시신이 발견되었지만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연행 관련 사망자도 존재한다. 계엄군의 폭력이 영구적으로 은폐된 것이다.

5. 폭력적 연행·구금의 근거와 동기: 군대와 준전시 상황

계엄군이 폭력을 전시했거나 혹은 은폐했거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계엄군이 무자비하게 폭력을 가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13) 예를 들어 광주교도소 의무과에서 생산한 “광주사태시 소요체포자 치료현황”을 보면 광주교도소에는 5월 21일 ‘소요체포자’ 중 중환자 143명을 응급 치료했다. 그러나 이때의 치료는 머큐륨을 바르고 붕대로 봉합하는 등 기본적인 처치에 불과했다(5·18사료편찬위원회 2000b, 205-206).

폭력은 어디서부터 기원한 것일까? 계엄군의 폭력의 근원을 추적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그것은 최정운의 『오월의 사회과학』에서 처음으로 발견되는데, 최정운은 군의 폭력을 군의 오랜 구타 전통, 진압 시 무차별적으로 진압하여 공포를 주입하고 흩어지게 하는 충정훈련의 속성, 5·18 이전부터 시위진압과 훈련으로 누적된 피로와 불만, 군 조직 내 지역차별 문제, 월남전의 경험, 시위를 매개로 한 개인적, 집단적 공격 본능의 표출 등에서 찾고 있다(최정운 1999, 145-146; 153-156). 이후에 등장한 연구들 역시 대체적으로 그것의 기원을 신군부의 작전과 정훈교육, 베트남전의 참전 경험에서 찾거나(김정한 2020), 5·16쿠데타 이후 공수부대에 대한 폭동진압 임무 부여, 1979년의 부마항쟁 경험과 육군본부의 진압지침 등에서 찾고 있다(노영기 2020). 반면에 신군부 지도부와 지휘관, 일선의 정규군을 구분하여 일선에서 학살은 명령체계에 따른 복종, 이데올로기 주입 효과, 동료 집단의 압력과 집단의 순응성, 이전 제노사이드의 경험(베트남전), 공수부대의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곽송연 2013, 30-43).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신군부의 작전과 정훈교육, 군대라는 특수성, 그리고 역사적 경험 – 특히 베트남전 – 이 계엄군의 학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곽송연, 김정한은 전시와 같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충동과 특수한 상황적 요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 연구는 특히 이 점에 주목하여 이를 더 보완하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사료전집에서 연행과 구금을 경험한 이들이 증언하는 계엄군의 언어를 통해 이것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들이 기억하는 계엄군의 언어의 단어나 문장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쏟아냈던

〈표 4〉 증언을 통해 본 계엄군의 폭력 동기

구분	계엄군의 언어
군대라는 특수성	“3공수를 물공수로 봤냐? 너희 이놈의 새끼들은 모두 죽여버려야 해”, “이 썩새끼들아, 공수부대가 뭔지 보여 주겠다.”, “공수부대만 무서운 줄 아느냐. 우리도 공수부대 못지않다”, “우리는 최전방에서 북괴군 목을 베어오고, 우리 전우도 목이 잘리는 DMZ에서 왔다. 공수부대 그 까짓 새끼들 하고 우리는 질적으로 다르다.”
역사적 경험	“이 대검이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지 아느냐. 머리를 밀면 머리카락이 면도한 것처럼 밀어져버린다. 우리는 날마다 숫돌로 간다. 여기 있는 놈들은 다 죽여버려야 한다. 김일성이보다 더 나쁜 놈들, 너희들은 모두 사살시켜 버려야한다”, “이 대검은 월남에서 베트남 여자 유방을 사십 개 이상 자른 기념 칼이다.”
폭동진압 (폭도, 빨갱이)	<p>“이 새끼가 이런 것도 못 참아? 그러면서 너희들 데모하나?”, “네 년도 대학생이지”, “야! 이 새끼야, 너 학생이지.”, “이놈의 새끼, 하리는 공부는 안 하고 지랄이야.”</p> <p>“학생이고 뭐고 소용없다.”, “너희들은 분명히 폭도다.”, “이 공산당 놈의 새끼들. 다 죽여야 해.”, “이 새끼 폭도 아니야. 너 같은 새끼는 죽여버려야 해”, “폭도 새끼들, 개 간나구 새끼들, 죽여버려.”, “나도 전라도 놈인데 너희 폭도 새끼들 때문에 사서 고생한다.”, “너희들이 애국가 부르고 태극기를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애국이나, 너희 같은 놈들은 죽어 마땅하다.”, “이 빨갱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총기를 탈취해서 저 지랄이야.”</p> <p>“광주 새끼들은 모두 죽여버리겠어”, “광주 놈들은 전부 죽여야 해.” “전라도 남자 씨를 말리겠다.”, “이 새끼야, 나이 씬이 뭐냐? 전남 폭도들은 전부 때려 죽여야 돼.”</p>
시위 상황 (분노, 피로)	<p>“이 지식, 맛 좀 봐라.”, “이 새끼를 본보기로 죽여야 한다”, “이놈을 저리 데리고 가 죽여버려.”, “이 새끼 죽여버리겠어”, “이 새끼들 몽땅 총살시켜 버리겠어!”,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 학교 안으로 데리고 가서 사살시켜 버려.”, “사살해 버려.” “임마 총 한 방이면 너희들을 한꺼번에 죽여버릴 수도 있어”, “지금은 계엄 상황이니 아줌마 한 명은 죽여도 아무 일 없스. 진짜 말을 안 하면 죽여버리겠소.”, “생식기를 오려내 버린다.”, “대검으로 유방을 때내버린다.”, “너도 유방이 잘리고 싶냐?”, “저 쌍년들 잡아다가 유방을 잘라버려.”</p> <p>“네! 우리 동료 죽었지? 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어. 그런데 네가 죽어?”, “오늘 저녁에 우리 대원 3명이 칼에 찔려 죽었다.”, “우리들도 죽을 만큼 죽었다. 네 놈들도 죽어야 한다.”, “여러 소리 마라. 우리도 여기 오면서 장성에서 피를 봤어!”, “너희 같은 놈들이 죽었다. 너희들도 이렇게 죽어봐라.”</p> <p>“이 폭도 새끼들! 너희들 때문에 며칠을 굶은 줄 아느냐?”, “이 개새끼들 하리는 공부는 안 하고 이놈을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 고생이란 말야”, “너희들 때문에 고생을 한다.”</p>

주: 이 표는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에서 5월 18일부터 26일 사이에 연행과 구금을 경험한 82명의 증언자들이 기억하는 계엄군의 언어 중, 폭력의 동기를 유추할 수 있는 언어만 추출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언어의 뉘앙스와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파악된 계엄군의 언어는 <표 4>와 같다.

<표 4>는 피해자의 증언에서 나타난 계엄군의 언어를 일부 발췌하고 재정리한 것이다. <표 4>에서 보듯이, 계엄군의 폭력의 요인은 크게 군대라는 특수성, 역사적 경험, 폭동진압, 시위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자들이 학살의 동기를 분석하면서 지적했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군대는 부대별로 경쟁하면서 명예와 사기를 생성한다는 측면은 간과되었다. 먼저 군대라는 특수성 측면을 보자면, 계엄군은 공수부대라는 자부심을 드러내 보이며 용맹함을 과시하려 했다. 마찬가지로 공수부대 대신 투입된 다른 사단 역시 공수부대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군대는 엄격한 명령과 복종체계를 가지고 전장에서 적을 무자비하게 섬멸함으로써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명예를 쟁취해 가지만 끊임없이 타 부대와 비교를 통해 자신의 우위를 내세우려는 경향 역시 강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역사적 경험 측면에서도 계엄군은 단순히 과거의 베트남전 참전 경험을 표출하는 것을 넘어 과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전장에서 군인이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고 적을 격퇴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군대의 목적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벌어진 비인도적 인명 살상 행위까지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베트남전의 전공과 살상을 내면화한 계엄군은 5·18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표출했다.

신군부는 공수부대를 폭동진압에 투입하기 전에 여러 차례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공수부대원들도 광주에 투입되기 전까지 빨갱이 혹은 폭

도를 진압하러 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곽송연 2013, 38-40). 따라서 시위현장에서도 그들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실제로 신군부는 대학가의 시위 진압을 위해 1980년 2월 충정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신군부는 학생 시위를 진압한다는 명분 아래 구체적인 방안까지 수립했는데, 가장 앞선 문서는 “부마지역 학생 소요사태 교훈”이다. 이 문서는 일종의 작전 평가서로 이 보고서의 3장 ‘소요사태 진압 시 유의사항’에서는 출동 부대가 “초동단계에 신속 진압: 군이 진압을 위해 투입되면 인명을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고 무자비할 정도로 타격, 데모대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함으로써 군대만 보면 겁이 나서 데모의 의지를 상실토록 위력을 보여야” 하고, “군이 출동하면 최강의 위엄과 위력을 과시하여 위압감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육군본부에서 작성한 “충전작전 대비지침”이라는 문건 역시 “전방 방어태세의 약화 없이 소요사태 ○○○(판독 불능), 경찰 능력 최대 활용, 경찰 능력 초과 시 지원, 군 투입 시 강력한 응징” 등을 지침으로 마련했다(노영기 2020, 71-73).

그러나 시위현장에서 폭력은 군대라는 특수성, 역사적 경험, 폭동진압이라는 명분만으로 설명하기 불충분하다. 곽송연과 김정한이 저술했듯이 5·18 현장은 마치 전장과 같이 격렬한 감정과 충동이 발현되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최정운의 언급처럼 당시 계엄군은 극도의 긴장과 피로가 겹친 상황에서 투입되었다(최정운 1999, 155). 식사와 잠도 잘 수 없었고 자신과 동료들 역시 생사의 기로에서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김용삼 2018/12/09). 따라서 시위대에 대한 인상도 좋지 않았다. 자신들을 피곤하게 하고 해를 가하는 존재

들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하나 더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분노에 더해진 일종의 복수심이다. <표 4>에서 보듯이 계엄군은 시위 상황 자체에 분노해 있었지만, 무력 충돌로 인해 자신들의 동료가 희생당하자 격분했다. 이때에는 계엄군도 이성이 작동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오늘날 폭력적 시위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전투경찰의 폭력도 같은 맥락일 수 있다. 그러나 지휘부가 사전에 폭력적이고 체포 위주의 진압이 아닌 ‘인도적’이고 해산 위주의 진압 기조를 세우고 철저히 교육했다면, 그리고 이를 어겼을 시 합당한 처벌을 가했다면 이와 같은 폭력은 줄어들었을 것이다. 결국 상황적 요인이 발생시켰던 폭력은 앞의 세 가지 요인들과 공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폭력적 연행·구금은 어떤 효과를 발생시켰을까?

6. 연행·구금이 지역민과 일선 행정기관에 미친 영향: 복종의 내면화와 협력의 확대

1) 공포와 불안의 상승과 객체화

계엄군이 연행 시에 보여준 살육적인 폭력 행위는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계엄군은 연행자를 따로 모아 어디론가 끌고 감으로써 공포를 더 극대화시켰다. 이는 연행 당사자와 이를 지켜본 시민 모두에게 적용되었다. 연행자는 계엄군에게 붙잡힌 순간부터 정신을 잃

을 정도로 무수하게 구타를 당하며 이송 대기 장소로 끌려갔다. 이 과정에서 연행자는 다리가 후들거리거나 심장이 멎을 정도로 두려움에 휩싸였다(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90, 621; 1015; 1350; 1446). 계엄군은 마치 잔인한 진압 장면을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저항의 의지를 꺾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행 시에 폭력을 전시했던 것과 달리 계엄군은 붙잡힌 연행자의 눈을 가림으로써 다시 불안감을 확대시켰다. 연행자는 이송 대기 장소에서도 기합을 받거나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박은 채 대기했기 때문에 도대체 그곳이 어디인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이후에 진행된 구금 장소로의 이송 시에도 마찬가지였다. 계엄군은 연행자의 고개를 숙이게 하거나 눈을 가렸다. 연행자는 계엄군에게 구타당하면서도, 실신했다 깨어나기를 반복하면서도 현재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생존을 위한 방도를 모색했지만 실패했다. 오히려 불안감만 커진 것이다.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다. 계엄군이 퇴각하기 전 5월 21일까지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는 도대체 시민들이 어디로 끌려가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었다. 돌아오지 않는 부모와 자식, 아내와 남편을 찾아 수많은 시민들이 시내를 헤매었고, 걱정과 불안에 시달렸다. 계엄군이 철수한 이후에 구성된 수습위원회 역시 연행자의 석방을 주요 협상 조항으로 내걸었을 정도이다. 계엄군은 구금을 통해 연행자를 사회와 분리하여 격리하고 이 같은 사실을 철저히 숨김으로써 연행자와 시민 모두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극대화시킨 것이다.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조력자’의 상실이다. 보게 하거나 - 계엄

군의 폭력전시 —, 볼 수 없게 하면서 — 연행자에 대한 눈가림, 시민들의 시선 차단 — 공포와 불안감을 확대했다면, 조력자의 상실은 연행자와 시민들 모두에게 좌절과 체념을 안겨주었다. 거리에서 시민들은 부상자를 치료하거나 연행자를 구출하려 시도했는데, 이를 통해 몇몇 연행자는 계엄군의 손아귀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다. 연행자는 주변의 조력자를 상실함으로써 더욱 무기력해졌으며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저항 의지의 상실로 이어진다. 조력자의 상실은 시민들 혹은 연행자의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혼란을 가져왔다. 연행자가 보이지 않는 어디론가 끌려가고 그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연행자를 도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모르게 되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연행자를 찾아 끝없이 시내를 헤매는 일뿐이었다. 저항의 주체이자 능동적 관찰자였던 시민들은 공포와 불안 속에서 계엄군의 전술에 휘말린 대상화된 객체로 전락한다.

2) 순응과 침묵

구금은 단순히 응보와 예방이라는 형사 사법적 목적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구금은 지속적으로 규율을 강제하는데, 이를 통해 “복종되고 훈련된 신체, ‘순종하는’ 신체”를 만들어낸다(Foucault 1995, 137). 5·18에서 연행·구금도 마찬가지였다. 연행자는 옷이 벗겨지고 줄줄이 엮여 연행되었으며 구금 장소에서는 등급에 따라 분류되었다. 또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식사를 하거나 조사를 받아야 했다. 엄격하게 통제된 생활 속에서 끊임없

이 계엄군의 폭력과 마주해야 했고, 죽어가는 동료들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심지어 동료들이 맞는 순간을 자신의 행복으로 받아들여야 할 정도로 계엄군의 폭력은 야만적이었다. 그 순간만큼 자신에게 가해지는 매질의 시간이 줄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계엄군은 눈동자를 움직였다는 이유로 눈에 담뱃불을 지켰고, 호송 중에 목에 담뱃불을 지지기도 했다. 또한 교도소에서는 물을 달라는 연행자에게 오줌을 먹이기도 했다(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90, 1452; 1475; 1479). 시민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구금 생활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 지나서 잡혀온 10여 명의 사람들은 교도소 안의 조그마한 창고에 갇히게 되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본격적인 구타가 시작되었다. 다음날 21일 아침 기상이라고 시끄럽게 깨우는 바람에 눈을 뜨긴 했지만 일어나서 앉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일어나 앉은 사람들 사이에 몇 사람이 그대로 누워 있었다. 그들의 눈과 코, 입에는 파리떼가 붙어 있었다. 밤사이 고통에 못이겨 소리 없이 죽어간 사람들이었다. 그 시체를 밖으로 끌어내는 것을 지켜본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90, 1506).

또 하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석방 시에 석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각서 쓰기와 군 장성의 설교이다. 연행자의 대부분은 상무대를 통해 석방되었다. 물론 31사단이나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그곳에서 석방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성들을 제외한 연행자의 최종 구금 장소는 상무대

였다. 상무대는 헌병대 영창과 연병장의 임시 막사, 그리고 공병대 교회에 연행자를 구금하고 차례로 석방하였는데, 다른 곳에서 구금되어 있다가 석방대상자로 지정되면 상무대 교회나 막사로 이송되어 머물다가 석방되었다. 예를 들어, 상무대 영창이나 광주교도소에서 C, D 등급을 받은 연행자는 상무대 교회로 옮겨져 며칠을 생활하다 석방되었다.

석방 대상자들은 석방되기 전, 계엄군이 불러주거나 칠판에 적어준 것을 그대로 받아써서 ‘국가와 계엄군의 보호를 받고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가족에게 편지를 보냈다. 다음으로는 연행자는 당시 전투병과 교육사령관이었던 소준열 장군이나 다른 지휘부의 연설을 듣고, 구금 장소에서 겪은 내용을 일체 발설하지 않을 것과 발설 시 유언비어 유포죄로 처벌을 받아도 좋다는 각서를 쓰고 나올 수 있었다.¹⁴⁾ 계엄군은 석방된 후에 이 같은 일이 발각될 경우 재구금할 것이라고 협박했기 때문에 실제로 석방자들이 석방 후에도 숨죽여 지냈다. 이와 같은 절차는 훈방 때마다 빠지지 않고 진행되었는데, 연행자는 시위와 상관없이 연행된 사람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위 참여자뿐만 아니라 연행·구금을

14) 5·18 기간 내에는 5월 20일 처음으로 연행자 167명을 훈방하기 시작하여 차례로 연행자를 훈방한다(5·18사료편찬위원회 2000a, 497). 또한, 5·18이 끝난 후에는 1980년 6월 4일 1차로 109명을(5·18사료편찬위원회 2000a, 500), 7월 3일 2차 훈방 시에는 680명, 8월 2일 3차 훈방 시에는 162명, 9월 5일 4차 훈방 시에는 147명으로 총 1098명이 훈방되었다(『광주사태 연행자 관계철』). 5·18 기간 중에도 몇 차례에 걸쳐 연행자가 훈방되었으나 정확한 수가 파악되지 않았다. 5·18 종료 후에는 4차에 걸쳐 훈방이 진행되었고, 이외의 연행자는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석방되거나 형을 선고 받은 뒤 형집행정지 등으로 석방된다.

경험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순응과 복종을 강제하는 효과를 생산했다.

석방되기 전에 나도 각서를 썼는데, “사회에선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였다. 그래서 나는 석방된 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 다녔고, 그렇게 두들겨 맞았지만 8년 동안 병원에도 한번 가보지 못했다. 대신 지금껏 한약과 단방약(뱀술 따위) 등을 먹고 침을 맞으면서 자가 치료만을 해왔다(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90, 1479).

이와 같은 효과는 연행·구금을 경험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전남 합동수사단’은 석방 시에 마중 나온 가족에게까지 ‘보증서’를 작성하게 했는데, 보증서는 상단에 훈방자의 본적, 주소, 직업,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상기인의 범법 행위에 대해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여 차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교화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여 이를 보증하고 상기인의 출석 요구가 있을 시 즉각 요구에 응하겠습니다”라는 문구 아래에 보증인의 주소, 직업, 대상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을 적고 날인하는 형태였다(5·18사료편찬위원회 2000a, 528). 이 때문에 연행자의 가족 및 친족 역시 5·18이 종료된 후에도 상당 기간을 숨죽여 지낼 수밖에 없었다.

3) 일선 행정기관의 복종과 협력 강화

5·18이 발발하자 정부는 광주에서의 ‘소요’ 사태와 관련한 지시를 쏟아냈고, 일선 행정기관 종사자들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담당 업무

를 수행하는 직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행정기관 종사자들은 계엄군의 위력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기회는 적었고, 각자의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시위대에 대한 진압과 동시에 벌어진 연행·구금은 완전하게 계엄군의 위력과 계엄령의 위엄을 일선 행정기관에 각인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연행과 구금은 이송과 수용 등 몇 단계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많은 일선 공무원들이 계엄군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들 역시 군의 실체를 직접적으로 목격하게 되었고, 특히 경찰은 연행구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계엄군의 폭언과 폭력을 직접적으로 겪게 된다. 그들 역시 계엄군으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받은 탓에 이송과 수용 과정에서 가해지는 계엄군의 폭력을 보고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좌절감을 느껴야 했다.

공수대원은 트럭 문을 열고 피투성이 상태의 학생들을 발로 걷어차서 그냥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식으로 하차시켰다. 이를 목격한 주위 경찰들이 이럴 수 있냐고 흥분했으나 지켜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이재의 2020, 76).

예를 들어 광주경찰서에서 31사단으로 연행자를 이송할 때 운전자와 관리자는 경찰이었는데, 검문소에서 계엄군이 버스에 올라와 연행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하자 경찰이 말리기도 했다. 하지만 계엄군은 이들에게도 쌍스러운 욕설을 퍼부어 도리어 경찰들이 맞지 않으려고 땀을 흘리는 상황이 벌어졌다(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90, 268; 1446). 따라서 일선 행정기관의 공무원들 역시 분노하면서도 복종을 내면화할 수밖에 없었다. 연행

자가 석방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때에는 광주시청 사회과 직원과 연행자 거주지의 동장도 일종의 ‘보증인’으로 동원되었는데, 연행자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공무원까지 석방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연대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이 절차를 통해 신군부는 연행자뿐만 아니라 일선 공무원에게도 순응과 복종을 강제한다.

다음으로 광주시의 일선 행정기관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었다. 연행과 구금은 그 자체로 경찰-검찰-교도소-법원 등 많은 기관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요구하는데, 5·18 당시에는 강제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계엄군은 시민들을 연행하면서 이동수단과 수용 장소, 수용된 연행자의 조사와 치료를 위한 인력 등이 필요했다. 따라서 기관 내에 수용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경찰서, 교도소, 대학, 병원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계엄군은 교도소 호송버스뿐만 아니라,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형사기동대 미니버스와 전경버스를 이송차량으로 활용했고, 경찰은 경찰서 조사실과 유치장, 창고 등을 수용 장소로 제공하고 경찰관들은 이들을 호송하거나 관리하는 인력으로 동원되었다. 대학 역시 운동장과 체육관, 강의동 등이 계엄군의 주둔과 연행자를 위한 수용 장소로 활용되었다.

연행자에 대한 훈방이 이루어질 때에도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계엄사의 지시에 따라 전라남도도 훈방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보호자와 공무원이 동행하여 훈방자를 인계받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연고자와 무연고자를 구분하여 무연고자의 경우, 공무원이 책임지고 인계하여 보호자와 연락할 것을 지시했다. 훈방조

치와 관련된 준비는 매우 세부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광주시의 “광주사태 연행자 인수계획(2차)”과 전라남도의 “광주사태 연행자 2차 인수계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수계획에 전라남도과 광주시는 인수 일시와 인수 인원, 인수 책임과 인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각 시군은 특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 책임하에 훈방자를 인계받는데, 사전에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훈방자가 입을 수 있는 의복을 준비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기관은 다시 상무대에 이 의복을 넘겨 훈방자가 당일 입고 나올 수 있게 했다. 관련 내용은 “광주사태 연행자 4차 인수계획 시달” 공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훈방이 결정될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광주사태 연행자 관계철, 58; 94-98; 109-110).

당일 보호자와 공무원은 사전에 등록하고(확인절차), 보호자가 보증 확인서를 작성한 후 훈방자를 인계받으면 행정기관은 미리 준비한 버스에 훈방자와 가족을 태우고 거주지까지 수송했다. 따라서 일선 행정기관은 단순한 통제 대상이나 협조 기관에서 적극적 협력 기관으로 부상하게 된다.

7. 나가며

5·18의 발발 원인을 두고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응축되어 광주에서 폭발했다는 시각과 5·18은 “능동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이 시기에 집권을 노리는 반동의 선택이 보다 규정적”이라고 본 시각, 계엄군

의 폭력이 시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켰고 이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시각 등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장은 아마도 두 번째 주장일 것이다. 박현채는 “박정희 체제의 후계를 노리던 군부세력이 광주를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절호의 장소로 선택했다”(정근식 2020, 재인용)고 주장했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광주를 선택했던, 계엄군의 야만적 폭력이 5·18의 직접적 계기가 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군부가 5·18을 겪으며 완전하게 정권을 찬탈하게 된 것은 분명하다. 신군부가 5·18 종료 이후 본격적으로 정권 수립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신군부는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를 발족하고 ‘사회정화계획’의 일환으로 그해 12월까지 공무원 5611명, 정부산하단체 및 기업 3,111명과 언론계까지 합하여 10,000여 명을 숙정(肅正)하였으며, 39,786명의 시민을 삼청교육대로 보냈다. 이 과정을 거쳐 전두환은 1980년 9월 1일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 1997, 329; 333; 337; 351).

이 연구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광주 일원에서 연행·구금이 지역민과 일선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순응하고 협력하는 데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먼저 계엄군은 광주에서 수많은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구금했다. 계엄군은 초기 진압부터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면서 연행했는데, 이는 시민들에게 공포를 극대화하고 복종을 강제하기 위해서였다. 계엄군의 폭력은 군대라는 구조적 특성과 역사적 경험, 폭동진압이라는 정권의 요구와 폭력적 시위 상황이라는 상황적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발생되었다. 군대는 적과의 대결에서 반드시 승

리해야 하며, 이것을 최고의 명예로 받아들인다. 여기에 신군부는 최강의 부대라고 불리는 공수부대를 ‘폭동’진압 부대로 훈련시킴으로써 정권을 수호하는 도구로 전략시켰다. 또한 시위 상황이 폭력적으로 전면되면서 계엄군은 자신과 동료들이 잇따라 부상당하거나 사망하는 것을 겪거나 목격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분노를 더욱 촉발시켰다.

구금은 연행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일선 공무원을 신군부의 권력 아래 복종시켰다. 연행과 구금은 그것의 특성상 연행-이송-수용-조사-석방이라는 여러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타 기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5·18 당시에도 계엄군은 연행자를 이송할 수단과 수용할 장소가 필요했으며, 그들을 관리할 인력도 필요했다. 실제로 관련 인력과 장비 및 공간을 확보한 경찰서, 교도소, 대학, 기타 행정기관 등이 서로 연계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선의 하부기관은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시위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시민들을 연행하고 구금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던 국가의 주요 활동이었다. 그것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국가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안녕을 도모한다는 미명 아래 국가에 저항하거나 기존의 질서를 비판하는 수많은 시민들을 연행하고 구금했다. 연행·구금이 국가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고 정치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다. 5·18에서의 연행·구금 역시 같은 맥락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고유한 특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5·18에서의 연행·구금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폭력적으로 연행되었고, 5·18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됐다는 점에서 보통의 시위에서 그것과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시위 상황의 경우 연행과 구금은 일시적으로 행해지거나 주동자를 색출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5·18 당시 광주 일원에서 발생했던 연행·구금과 그것이 지역민과 일선 행정기관에 미친 영향은 신군부의 권력 장악이라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이를 위해서는 보안사나 군 자료를 발굴하여 5·18 당시뿐만 아니라 직전의 예비검속, 종료 후의 수배와 연행 등에 대해서도 접근해야 한다. 또한 한국전쟁 전후, 4·19 혁명, 부마항쟁과 같은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 검토를 통해 이를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를 통해 연행·구금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확립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주었고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다.~~

참고문헌

- 곽송연. 2013. “정치적 학살(politicide) 이론의 관점에서 본 가해자의 학살 동기 분석: 5·18광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3(1), 13-48.
- 광주광역시사학회. 2018. 『5·18의료활동II』.
- _____. 1996. 『5·18의료활동』.
- 김영택. 2008. “신군부의 정권찬탈을 위한 공수부대의 5·18.” 『역사학연구』(구 전남사학) 34, 149-194.

- 김정한. 2020. "광주학살의 내재성: 쿠데타, 베트남전쟁, 내전." 『역사비평』 131, 63-85.
- 김희승. 2017. "5·18 민주화운동의 재구성." 『민주주의와 인권』 17(2), 5-58.
- 김형주. 2018. "5·18 최후항전 참여자들의 구금 생활 연구: 2011년 5·18민주화운동 구술 자료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7(4), 5-44.
- 노영기. 2020. 『그들의 5·18』. 푸른역사.
- _____. 2015a.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발표와 희생." 『민주주의와 인권』 15(3), 5-39.
- _____. 2015b. "상무총정작전(尙武忠正作戰)의 입안과 실행 - 1980년 5월 27일 최후의 진압작전을 중심으로." 『사람(성대사립)』 52, 273-299.
- _____. 2013. "5·18 항쟁 초기 군부의 대응." 『한국문화』 62, 279-309.
- _____. 2005. "5·18항쟁과 군대"에 관한 연구와 전망. 『민주주의와 인권』 5(1), 253-284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997. 『12·12, 5·18 실록』.
- 박만규. 2003. "신군부의 광주항쟁 진압과 미국문제." 『민주주의와 인권』 3(1), 211-242.
- 안길정. 2017. "계엄군의 광주 봉쇄." 『사람(성대사립)』 60, 367-397.
- 야스퍼스, 카를(Karl Jaspers). 2014. 『죄의 문제』. 이재승 옮김. 엘피.
- 이재의. 2020. 『안병하 평전』. 정한책방.
- 전남지방경찰청. 2017. 『5·18 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
- 정근식. 2020. "김대중과 5·18, 그리고 국제연대." 2020 김대중 민주인권평화포럼 발표문.
- 정해구. 2001. "군 작전의 전개과정." 『5·18민중항쟁사』.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256-256.
- 조시현. 2018. "5·18항쟁의 국제법적인 성격과 책임자처벌 문제." 『국가폭력 트라우마 국제회의 자료집 '불처벌』. 광주트라우마센터, 44-82.
- 최정기. 2001. "5·18과 양민학살." 『5·18민중항쟁사』.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404-440.
- 최정기·김형주·양라윤·유경남. 2020. 『1980년 전남대 총학생회와 박관현』. 도서출판 선인.
- 최정운. 1999. 『오월의 사회과학』. 오월의 봄.
-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 황석영·이재의·전원호. 201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광주 5월 민중항쟁의 기록』. 창비.
- 5·18사료편찬위원회. 2002.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26권』. 광주광역시.
- _____. 2000a.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22권』. 광주광역시.
- _____. 2000b.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23권』. 광주광역시.

_____. 2000c.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25권』. 광주광역시.

Foucault, Michel. 1995.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Vintage.

〈자료〉

『광주사태시 전교사 작전일지』.

『광주사태 연행자 관계철』.

『부상자 실태 조사서/ 김정형외과 외』.

『부상자 실태 조사서/ 전대병원』.

『부상자 실태 조사서/ 조대병원, 적십자병원』.

김용삼, 2018.12.09. “광주 투입 3공수 15대대장 박종규의 5·18체험기.”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57>(검색일 2020.09.06)

정대하. 2017.10.23. “5·18 당시 옛 광주교도소 압매장 12구.” 『한겨레』. http://m.hani.co.kr/arti/area/area_general/815667.html#cb(검색일 2020.09.06)

The Arrest and Confinement of Gwangju Citizens
by the Military Authority during the May 18th
Democratic Movement and Its Effect

Kim, Hyungju

The May 18 Institute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reveal how citizens were arrested and confined during the May 18th Uprising and understand the effects of such arrest and confinement in the local context. Specifically, the experiences of citizens who were arrested and confined from May 18th to 26th and the actions and language of the martial law force inflicted at this time were analyzed to identify the factors, methods, and effects of the arrest and confinement. Based on the analysis, the following information was obtained. The citizens were indiscriminately arrested by martial law force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ctually participated in the demonstration, were just passed through the site, or just watching. At a place close to where they were first arrested, they were forced to kneel and wait with their clothes stripped off and their heads bent to the ground. Then, they were loaded onto military trucks, riot-police buses, police task force minibuses, prisoner escort vans, etc. and taken to various sites for detention, such as the Gwangju Police Station, Western Police Station, Gwangsan Police Station, Air Force Military Police, Chosun Universit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31st Infantry Division, Gwangju Prison, and the Sangmudae military training facility. At the detention site, the citizens were investigated and classified into A, B, C, and D grades to be released or confined. In this process, the martial law forces inflicted ruthless violence on the citizens, a behavior caused by the idea instilled

in soldiers to annihilate enemies for victory, the military culture that takes pride in being the strongest, the government's orders to suppress the riots, and the experiences of tension, fear, anger, and exhaustion from their engagement with the protesters, etc. The arrest and confinement during the May 18th Uprising, instilled fear not only in those who were arrested and taken into detention place but also among citizens in general and frontline officials, which forced their obedience. Also, the frontline administrative agencies became collectively mobilized and organically involved in arrest and confinement, influencing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cooperate with the military authority.

■ **Keywords:** May 18th Uprising, Military Authority, Martial Law Force, Arrest, Confinement

투고: 2020/09/21 심사: 2020/10/23 확정: 2020/11/25